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임용 규정 전문

제정 2000. 5. 1 규칙 제1051호
제3차 개정 2009. 2. 25 규칙 제1219호
제4차 개정 2012. 5. 31 규칙 제1293호
제5차 개정 2014. 10. 29 규칙 제1360호
제6차 개정 2020. 5. 11 규칙 제1515호
제7차 개정 2021. 2. 19 규칙 제157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조교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청주교육대학교 조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분 및 소속) ①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조교(이하 “국가공무원조교”)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된 조교(이하 “대학회계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21.2.19.>

② 본교의 모든 조교는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소속하되, 부설기관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소속한다.

③ 대학회계조교에게는 센터, 연구소 등의 부가적인 행정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4조(자격) 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라야 한다.

제5조(조교 신규임용) ① 조교의 신규임용은 해당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조교공채요청서(별지1호 서식) 제출에 의해 공개 채용한다.<개정 2021.2.19.>

② 조교 공채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2.19.>

③ 서류심사(별지 제5호 서식)는 해당 조교 소속 학과장 또는 부서장이 한다.<개정 2021.2.19.>

④ 면접심사(별지 제6호 서식)는 학과 소속 조교의 경우 해당학과 교수 전원, 부서 소속 조교의 경우 부서 운영(실행)위원회 전원이 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⑤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제6조(임용기간) ① 국가공무원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대학회계조교의 임용기간은 청주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7조(재임용) ① 국가공무원조교의 재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2.19.>

② 삭제

③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국가공무원조교의 재임용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21.2.19.>

④ 삭제

제8조(근무성적평정) ① 조교의 근무성적평정은 조교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국가공무원조교는 임용 기간 만료 1개월 전, 대학회계조교는 매년 2학기말 기준 1개월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1.2.19.>

② 국가공무원조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의 합산평균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9.>

③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은 해당 학과 소속교수 전원이 평정(해당 부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평정하되, 조교의 소속이 센터일 경우에는 실행위원회 위원 전원이 평정한다)한 후 조교근무성적평정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평정자 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1.2.19.>

④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교 소속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의 근무성적 평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제9조 <삭제> <개정 2021.2.19.>

제10조(위임규정) 삭제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조교는 이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1 규칙 제1175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25 규칙 제1219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31 개정 제129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조교는 이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29. 개정 제136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1. 규칙 제1515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규칙 제1578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학회계조교는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지 1】

조 교 공 채 요 청 서

1. 공채인원:

2. 공채사유:

3. 채용학과(부서) 및 담당업무

학과(부서)	주요담당업무	비 고

위와 같이 조교 공채를 요청합니다.

20 . . .

학과장(부서장)

(인 또는 서명)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2】 <삭제 2021.2.19.>

【별지 3】

조교근무성적평정표

피 평 정 자	학과(부서) : 성 명 :						
평정사항	평정요소	10점	9점	8점	7점	6점	비 고
1. 근무수행능력	가. 청 럽 성						
	나. 창 의 성						
	다. 합 리 성						
	라. 신 속 성						
	마. 능 륜 성						
2. 자질 및 태도	가. 품 성						
	나. 사명의식						
3. 근무상황	가. 근태상황						
	나. 친 절 성						
	다. 인간관계						
합 계							

평정자 학과(부서) :

성명 : (서명)

조교근무성적집계표

피 평 정 자		학과(부서) : 성 명 :								
평 정 자 평 정 영역		A	B	C	D	E	F	G	H	I
1. 근무수행능력	가. 청 렬 성									
	나. 창 의 성									
	다. 합 리 성									
	라. 신 속 성									
	마. 능 률 성									
2. 자질 및 태도	가. 품 성									
	나. 사명의식									
3. 근무상황	가. 근태상황									
	나. 친 절 성									
	다. 인간관계									
합 계										
합산평균										

확 인 자 교무처장 성 명 : (서명)

【별지 5】

서류심사 평가표

접수번호 :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 고
전공 일치 및 업무 적합 정도	10		항목별 최하점수는 배점의 60%로 함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0		
자기소개서	10		
합 계	30		

위와 같이 평가함.

2000. 00. 00.

심사위원 학과장(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6】

면접심사평가표

접수번호 :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 고
직무 능력	30		항목별 최하점수는 배점의 60%로 함
경력 및 자격	20		
자질 및 태도	20		
합 계	70		

위와 같이 평가함.

20 . . .

심사위원 학과명(부서명) 교수

(인 또는 서명)